

## 계열별모집학과의 전공선택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01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18.09.13

개정 : 2019.07.10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계열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말(졸업학기 제외) 진급시 전공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열(학과)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의 적성 성과 장래 직업선택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2조(전공선택 지원자의 자격) 계열별 모집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3조(지원시기 및 방법) 매 학기말(졸업학기 제외)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별도의 전공선택 지원서를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 날인하여 각 계열별 전공결정 사정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4조(전공별 인원) 전공별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정원은 계열(학과)에 속한 교원들이 정한다. 다만, 계열별 모집학과의 모집인원 미달로 전공별 최소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18.09.13., 2021.03.01., 2021.12.01.>

제5조(전공결정 사정위원회) 계열별 모집에 의해 입학한 학생의 전공결정을 위하여 전공결정 사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구성한다. 위원회의 구성은 계열(학과)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6조(전공결정방법) ① 학생의 선택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공별 인원이 15명 미만이 될 시에는 1차로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전공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지도교수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정원이 15명 미만일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  
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1.12.01.>

1. 직전학기까지 전체교과목의 평점평균(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점수를 신청  
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평균을 계산한다.) <개정 2018.  
09.13., 2021.12.01.>

2. 전공교과목의 평점평균 <개정 2021.12.01.>

3.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동점자의 경우 : 전공별 정원에 불구하고 동점자 전원을  
해당전공으로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전공 결정 통보) 전공 결정 후 위원회는 학과별로 학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이를 7  
일 이상 공고하며, 휴학자에게는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0.  
03.01., 2021.12.01.>

제8조(이의제기) 전공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전공결정 공고 후 7일 이내에 서면으  
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<개정 2019.07.10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9조(전공변경) 학생이 전공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 
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#### 부 칙

① 본 규정은 2001학년도 계열별 모집에 의한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본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열별 모집학과 학과장의 협의에 의해  
교무학생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:2014.11.01. 2020.3.1>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